

국산기계 구입용 외화대출 및 용자대상 품목 확인 지침 안내

1. 용자개요

- 지원규모 : 총 25억불(승인기준, 3/4분기 : 12.5억불, 4/4분기 : 12.5억불)
- 금리조건 : 취급은행별 자율결정(대략 Libor+1.0~1.5% 수준)
- 용자대상 : 한국기계공업진흥회 및 각 취급 생산자단체로부터 외화대출 용자 대상품목 확인서를 발급받은 용자대상 기계설비류를 국내생산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업자 단 가정용으로 구입하는 경우와 대기업자가 생산하고 대기업자가 구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동일인 한도 : 15백만불
- 대출조건
  - 대출비율
    - 중소기업 : 기계구입가액(부가세 제외)의 100% 이내
    - 대기업 : 70% 이내
- 대출신청접수 및 대출취급은행 : 외국환은행(수출입은행 제외) 대출 영업점
- 용자접수 : '96. 7. 1 (각 은행별 사전 문의 가능)
- 확인서 발급 : 기계공업진흥회 등 9개 확인 기관
- 용자대상 및 우선지원 대상품목
  - 가. 자금 용자대상품목은 다음 각호의 품목으로 함
    -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별표1의 2에 의한 「자본재산업」에 속한 기계설비류
    - (2) 첨단산업의 발전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통상산업부에서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중 기계

설비류

- 상공자원부 고시 제1994-36호 (1994. 4. 7)

나. 용자대상품목중 다음의 품목에 대해서는 자금을 우선 지원함

- (1) 자본재산업의 육성 및 수입대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통상산업부에서 고시한 「기계류, 부품, 소재, 국산화대상품목」 및 「자본재산업 전략 품목」중 기계설비류
- (2) 자본재의 품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립기술품질원에서 고시한 「기계류, 부품, 소재의 품질인증 요령」에 따라 우수품질마크(EM마크)를 받은 기계 설비류

※ 공업진흥청 고시 제1995-219호 ('95. 7. 1)

- (3) 자본재의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통상산업부에서 고시한 「자본재 표준화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개발된 기계설비류 또는 표준규격부품이 채택된 기계설비류

※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27호 ('96. 3. 16)

- (4) 자본재 산육성대책에 따른 「금형산업 경쟁력 확보방안」에 따라 통상산업부가 고시한 「중점육성 대상금형」

※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66호 ('96. 5. 23)

※ 용자대상품목확인 취급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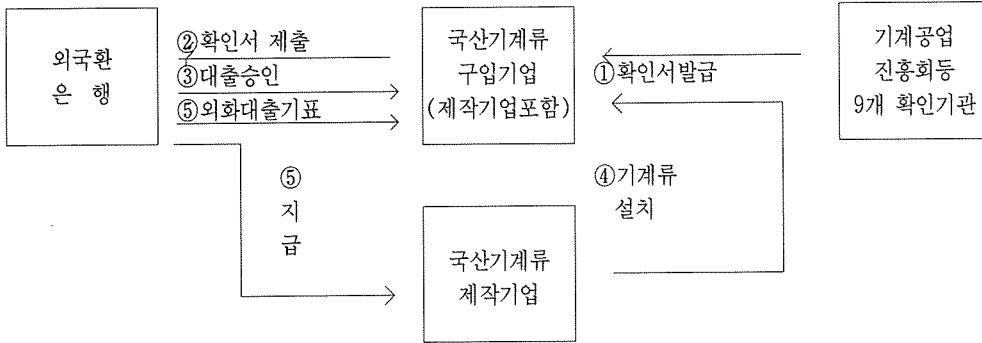
- (1) 한국기계공업진흥회 : 전 품목
- (2)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 : 공작기계류 및 로봇트
- (3) 한국섬유기계협회 : 섬유기계
- (4) 한국봉제기기공업협회 : 재봉기
- (5) 한국광학기기협회 : 광학기기
- (6)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 금형
- (7) 한국반도체산업협회 : 반도체장비
- (8) 한국전자산업진흥회 : 통신기기류, 계측

# 진흥회계시관

기기류, 정보처리시스템

(9) 한국전기공업진흥회 : 전기기기류

## 2. 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자금 용자절차



- ① 확인서 처리기간 : 7일
- ② 외국환은행에 확인서 제출하여 대출 신청
- ③ 외국환은행 대출 승인
- ④ 국산기계류 제작기업이 구입 기업에 기계류 설치
- ⑤ 외화대출기표와 동시에 국산기계류 제작기업에 자금 직접 지급  
(다만, 소요자금의 10% 이내의 계약금, 기성고에 따른 50% 이내의 중도급을 지급할 수 있음)

## 3. 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자금 용자대상자 확인지침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산기계 구입용 외화대출자금 용자대상자 선정요령(통상산업부 고시 제96-318호)에서 정한 용자대상품목 확인에 필요한 업무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산재료비율 확인) 신청된 기계설비류의 국산재료 비율 확인은 주요 품목별로 구성하는 부분품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제3조(처리기간) 확인기관은 국산기계 구입을 위한 외화대출 용자대상 품목 확인(신청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보완 기간 및 공휴일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조(이의신청) 확인신청업체는 용자대상품목 확인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확인기관에 확인일로 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가. 이의 신청서(소정양식 제5호)

나. 반려된 확인서

제5조(제재조치)

가. 확인기관은 기확인 품목이라 할지라도 신청업체가 고의로 신청 내용을 허위신고 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나. 신청 내용을 고의로 허위 신고한 업체는 1년간 확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 확인기관은 품목당(모델별) 확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부 칙

①이 지침은 1996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4.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1) 구비서류(소정양식은 복사하거나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해서 사용해도 됨)

가. 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 용자대상 품목확인(신청서) 2부.(소정양식 1호)

# 진흥회게시판

나. 용도설명서(소정양식 제2호) 및 서약서(소정양식 제3호) 1부

다. 카타로그 또는 도면 1부

라. 기계류, 부품, 소재 국산화 대상품목 및 자  
본재산업 전략품목 개발완료 확인서 1부

－ 해당업체에 한함

마. 우수품질마크(EM마크) 증명서 1부.

－ EM마크를 받은 경우에 한함

바. 통상산업부에서 고시한 「자본재 표준화사  
업운영요령」에 따라 개발된 기계설비류  
또는 표준규격부품이 채택된 기계설비류라  
고 입증하는 서류 1부.

－ 자본재 표준화 사업운영 요령에 따라 개  
발했거나 또는 표준규격부품이 채택된 경  
우에 한함.

사. 「금형산업경쟁력확보방안」에 따라 통상산  
업부에서 고시한 「중점육성대상금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중점육성대상금형」인 경우에 한함.

아. 국산재료비율 현황 1부.(소정양식 제4호)

야. 중소기업 확인서류 1부.

－ 은행,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  
회가 확인한 확인서 또는 세무서 확인 전  
년도 재무제표

## (2) 서류 작성요령

가. 국산기계 구입용 외화대출 용자대상 품목  
확인(신청)서

○ 확인번호, 용자대상품목 구분, 확인일자  
는 확인기관에서 기록

○ 세번(Harmonized Commodity descrip-  
tion & Coding system)은 10단위로 되  
어 있는 품목별 숫자를 명기(참조 : 한국  
관세연구소발행 [H.S 종합편람])

○ 사양란은 신고품목의 주요기능, 성능을 나  
타낼 수 있는 주요 제원(SPEC)만을 수  
치상으로 명기

단, 대형기계설비류(프랜트)일 경우 주요  
사양과 구성장치(기계)명을 함께 명기

－ 품목별로 확인서를 각각 작성하되, 동일품  
목에 모델이 다수일 경우 신청서에 모두  
명기

○ 모델명이 여러개 일때는 모델별로 모델명,  
사양, 판매가격을 사양란에 기재

나. 국산 재료비율

○ 대형 기계설비류는 각 주요 품목별로 구  
분하여 국산화율을 산정하여야 하며

○ 품목별 국산화율 산정은 2~5%의 부분품  
별로 분류하여 최소 30개에서 최대 50개  
의 부분품으로 나열하여 산정한다.

다만, 2~5% 부분품별로 분류가 불가  
할 경우에는 달리 분류할 수도 있다.

## 대 베트남 투자사절단 모집안내

KOTRA에서는 저렴한 노동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한국업체의 투자 적격지로 부상한 베트남에 투자진출을 희망하는 한국업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투자사절단을 구성 현지에 파견하여 합작투자 희망 베트남 기업과 Match-Making 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동 상담회에 참가할 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본회 회원사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1. 상담회 사절단 파견 개요

－ 파견기간 : '96. 9. 16~22(6박 7일)

－ 파견지역 : 베트남, 호치민시

－ 구 성 : 업체 20개사 내외, KOTRA 2명

－ 주요활동 일정

• 9.16(월) 서울출발, 호치민시 도착

• 9.17(화) Match-Making 상담회 개최

• 9.18(수) 유관기관 방문, 수출공단 방문

• 9.19(금) 업체별 개별상담 및 현지 시장 조사 활동

• 9.21~22(토, 일) 호치민시 출발, 홍콩경유, 서울도착

# 진흥회게시판

2. 참가업체 모집분야(투자유망분야)
  - 노동집약적 경공업 및 관련 원부자재 : 의류, 가방, 신발, 봉제완구, 약세사리 제조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산업분야
  - 농수산물 재배 및 가공업 : 낙농업, 화훼재배, 커피, 고무, 수산물, 설탕, 김치 등의 가공
  - 소비재 산업 : 금속양식기, 가정용 전기·전자제품
  - 관광, 유통 등 서비스산업 : 대규모 호텔, 백화점 등
  - 각종 건축 및 건설기자재 : 알루미늄 창호, 벽지, 페인트 등을 포함한 각종 건축내장재
  - 기간산업 분야 원부자재 : 시멘트, 석유화학제품, 철강제품 등
3. KOTRA지원사항 : 베트남 업체와 상담주선(상담장 임차, 업체별 상담슬케줄 작성 제공, 통역지원)투자허가기관 및 투자진출 한국기업 방문주선, 진출업체와 간담회 개최, 베트남 투자환경자료 제공, 호텔예약, 비자발급 등
4. 참가자 부담
  - 참가비(10만원) : 참가신청 후 불참시 환불되지 않음
  - 여행소요경비 : 약128만원(잠정 : 항공료, 숙박비, 비자발급비, 기타 여행경비 등)
5. 참가신청 요령
  - 신청기한 : '96. 6. 29
  -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공사소정양식), 참가비납부영수증
  - 참가비 무통장 입금(계좌번호 : 상업은행 424-01-001351, 예금주 : 무역진흥)
6. 참가신청처 : KOTRA투자진흥처 투자지원부(전화 : 551-4506, 팩스 : 551-4463, 담당자 : 성병훈)

## 「세계유명부품구매업체 디렉토리」 디스켓 제작 판매안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는 우리나라 부품산업 육성과 수출촉진을 위해 세계유명구매업체 디렉토리를 디스켓으로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불법 복제방지 기능이 들어있는 동 디렉토리 디스켓에는 미국, 영국, 일본 등 20개국의 전자, 전기부품, 자동차 부품 및 일반기계류 부품 등 900여개의 최신 부품구매업체 연락처와 구매현황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PC에 관한 전문지식 없이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필요한 자료를 검색, 출력할 수 있으며 우편 구입도 가능합니다.

1. 판매가격
  - 일반업체 : 18,000원/개당
  - KOTRA회원사(기본회원) : 14,400원/개당 (20% 할인)
2. 구입방법 및 판매처
  - 방문구입시 : KOTRA정보상담처(무역회관 12층)
  - 우편구입시 : KOTRA 상품개발처

※ 구입금액을 무통장입금 시킨후 입금증 사본에 회사명, 주소, 전화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팩스(02-551-4335)송부(상업은행 424-01-001351, 예금주 : 무역진흥)
3. 문의처 : KOTRA상품개발처 조기창 (TEL : 02-551-4333)

## 국내 거래된 원자재의 거래일자 확인방법 개선안내

1. 현행
  -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체에 공급된 원

자재에 대한 기납증 등을 발급할 때 물품수령증명서 상의 인수일을 기준으로 발급하고 있음.

- 현재 원자재를 로칼공급할 때 대부분 기업에서 내국 신용장을 개설하기 전에 미리 원자재를 선공급하고 물품 수령증은 물품 대금 결제용으로 발급하는 경우가 많음 (실제 공급일과 물품 수령증상 인수일자는 약 2~3월 차이가 있음)
- 국내에서 로칼매입한 원자재로 제조한 물품을 수출하고 기납증으로 환급신청할 때 선매입·후수출의 예외를 인정하여 수출일이 원자재 매입일보다 3월이내 늦은 경우에도 환급을 허용하고 있음.

2. 문제점

- 원자재의 국내 매입일이 제품의 수출일보다 앞서야 하나(환특법 제5조 제1항)
  - 수출일이 원자재의 매입일보다 3월이내 늦은 경우에도 환급을 허용하므로 환특법 규정에 맞지 않음.
- 국산원자재에 대하여만 선수출·후매입을 허용하므로 환급전산개발이 복잡해 짐
- 수출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환급제도에 수용하여 공정한 질서확립 역행

3. 개선내용

- 원자재의 실제거래일자를 기준으로 기납증을 발급하고 환급할 때 3월범위내에서 선수출·후매입을 허용하던 것을 폐지
- 기납증발급신청시 제출하는 물품수령증상에 실제거래일자를 기재하여 신청토록 하고 이를 인정하여 기납증 발급

4. 시행일자

- '96. 7. 1 양도(매입)된 원자재에 대한 기납증발급분부터 적용

대 EU 민·관 합동 투자유치단 참가업체 모집안내

정부는 선진국산업계에 대한, 투자 분위기를

확산하고 우리기업들에게 기업과의 상담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1월 대 EU 민관합동 투자유치단을 파견키로 하였습니다.

EU전자업계에 귀사를 홍보하고 현지 업체와의 합작이나 기술제휴에 좋은 기회가 될 이번행사에 회원사 제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 드립니다.

○ 신청 및 문의처

- 신청 : '96. 7. 15(월), 본회 국제부
- 문의 : 본회 국제부 강홍식 대리, 최성식

국방과학기술의 관리 및 이전에 관한 규정 안내

군전용 국방과학기술의 민수이전과 관련하여 국방과학기술의 관리 및 이전에 관한 규정을 본회 자료실(Tel : 562-5054)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은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항과 제21조 및 제21조의 3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40조 및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군전용 국방과학기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내·외 이전 및 유통에 필요한 방침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심있는 회원사는 많은 활용바랍니다.

한국 기업체 근무회사를 찾습니다.

아일랜드 정부에 의해 설립된 FAS는 일정자격을 갖춘 아일랜드 대학졸업자의 해외근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연간 60명 정도의 아일랜드 대졸자들을 2년기준으로 해외 각지 기업들에게 알선하여 현지 문화를 경험하는 반면 현지기업들의 세계화에도 이들을 고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기업이나 기타 상세내용 문의 및 고용신청은 본회 국제협력과(Tel : 554-673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